

本社ビル 大阪府守口市竜田通1丁目13番地
電話 (06) 991-3222(代)

仙台伝道所 挙行



야한다고 강조했다.
關東地方會長 高元喆牧師의

金昌杰牧師

總會를 대표해서 金君植牧
 師가 祝辭했다。苦難을 참고
 에는 一九八四年十二月에 赴
 派送받아 訪日했다。札幌教會

中部地方会葬으로 告別



には、一九八四年十二月に赴
 する三人を中心に、バネルデイス
 カッションを行いました。そ
 全国協議会においては、十一
 教会十八名の代議員と、オブザ

全協大会開催さる

代表委員に呉光現君選出

教会十八名の代議員と、オブザ

2億6千万円으로
4층建物完成



議員が新たに中央委員として選
 ます。
 (報告者 総務 金智重)
 けて協力・努力していくことと
 確認しました。

去る9月15・16日の連休に

けて協力・努力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759-20 宇部市厚南区上中野七区
電話 0836 (41) 3334

本 社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26
〒816 電話 (092) 461-0055(代)
営業所 神戸市中央区国香通4-1-2新大国ビル702
〒651 電話 (078) 242-4018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 番

指紋を拒否する理由

이 손가락 그리스도의 肢体

金 齊

炫(横須賀教会)

「바벨론」 여러江辺 거기있
아서 시온을 記憶하며 울었
도다(詩篇137:1)「나
온면 유대명과 에우살함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
하는,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의
이 애절한 詩를 읽을때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할수 없다. 그것은 우리
日同胞의 身世가 그들과 비
슷하기 때문이다.

日本에 있는 七十万僑胞
다 더 情은 故郷을 그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國民은 本
國을 恨을 줄로 나는 생
각한다.

우리는 다른나라에 사는僑
胞과 다르다. 日本에 와살고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
니다. 나라가亡하였기 때문
에 유대사람들같이 억지로살
려와서 살게되었다. 決코 우
리는 가장 우리를 반대하는
이日本땅이 좋아서 살고있지
않는다.

本國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아무 쓸데없는者인지 모르
나 우리는 新聞을 통해서밖
에 알수 없는 本國사람들의
뉴우스 하나하나에 기빠뛰기

用되었다. 지난 韓日關係會議
에서도 우리의 待遇問題가政
治去來의 미끼로 쓰여졌다.
李長官의 國連에서의 發言이
그証거이며, 十月二十二日의
中曾根 國連會談에서도 우리의
人權問題는 나오지 않았다.
金日成政府도 日本의 經濟
技術援助를 얻기 위하여 아
양을 떠는지 指紋問題에 對
하여 아무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非國民의利
權追求도 四十年만에 드디어
리들을 다시 어둠에 할수없
다. 도리어 밝아진 우리눈으
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비
추어 國民이 痛恨하여지지않
으면 國家도 隆盛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봉사가 되어서
는 안된다.

在日僑胞의 犯罪予備軍의思
想은 故古田首相의 「不逞鮮
人」 發言以來 日本政府안에
정기게 내려오는 朝鮮人觀에
서 나온것이며, 十四년도 이
思想에서 나왔다. 萬一 在日
外國人中 六十萬이 그들이崇
尚하는 歐美人이고 僑胞가少
數者였으면 이런 規定은 外
法에 違反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는 犯罪予備軍이 아니
다. 한때 僑胞의 犯罪記事가
新聞에 자주 나오지 않았
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義務만 있고 權利도 實力도
없는 우리 僑胞가 모든 條
件이 갖추어진 日本人과 變

爭하여 生活하려는 그中에
落伍者가 나오는것도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犯罪者의 數
를 日本人의 犯罪率에 比하
면 決코 많은數가 아니다.
世界人權宣言에는 個人尊重
과 權利의 平等(一), 差
別禁止(二), 非人道的의 屈
辱의取扱 禁止(五), 名譽
와 信用의 保護(十一), 名譽
와 世界人權規約에는 生存과
自由의 保障(一), 非人
道的의 或은 品位를 損傷하는
取扱 禁止(七), 法의 平
等과 保護(二十六)가 規
定되었으며, 日本憲法에는 國
際條約과 法規의 遵守 및 違
憲法律의 無効(九十八條),
基本人權의 不可侵(十一),
九十七條), 差別禁止(十四條)
가 規定되어 있다. 또 韓日
基本條約四條에는 國連憲章原
則 適合이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在日僑胞도 日本憲
法의 適用을 받으며, 앞에
한 모든 人權이 當然히 保
障되어 있다.

따라서 外發法十四條는 憲
法違反이며, 無効한 法이다.
指紋을 찍음으로 도리어 憲
法에 違反한 罪로 日本에서
逐出을 當할 罪까지 있다.
日本政府는 日本은 法治國
이나 法을 지키라고 한다.
市民의 生活과 人權을 지켜
야할 警察은 人權規約九條와
憲法三十三條의 惡意的逮捕抑
留 禁止規定에 違反하여 指
紋捺印拒否者를 告發할 市當
局의 告發도 없이 逮捕하며
人權의 保護, 救濟措置를 해
아한 司法府는 人權規約二十
六條의 法的平等保護와 救濟
憲法十四條의 法的差別禁止에
違反한 指紋捺印規定의 違
憲性의 判決을 回絶하고있다.
이런 나라는 法治國家라 할
수 있을까?

나는 七十万僑胞가 다 指
紋을 拒否하여 法治國家 日
本의 憲法을 遵守하기를 바
란다. 이제 四十年後의 時
期를 놓치지 말고 自己를 되
찾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뿐
만 아니라 우리 子孫까지
영영 犯罪予備軍의 屈辱속에
生活해야 할것이다. 우리
는 하나같이 지으신 사람으

로서의 自己의 貴한 尊嚴을
를 깨닫고 그에 適合한 生
活을 해야한다.
差別은 하는 者도 나쁘나
받는 者도 나쁘다. 나쁘
한 朝中藥까지 우리 祖上들은日
本에 先進文化를 傳하여 주
며 尊嚴을 받았다.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 逸樂과 政爭
과 事大主義의 毒을 받아나
를 망치고 日本의 支配를
받게 되었다. 解放後 四十年
이 되어도 아직도 分斷國家
로 續은 땅이 두동강이가되
어있으며, 四分之一의 國民이
사랑하는 家族과 갈려져서
死生도 모르며 살고있다.
이러한 民族을 누가 尊嚴하라
우리 在日僑胞는 어떠한가
解放後 四十年이 되어도 일
을 열면 이름과 名譽를 빼앗
아갔고 日帝를 非難하는 그
들이 이제 스스로 日本人
인세 하려고 日本名을 쓰며
日本名을 하며 子息들까지日
本人으로 기르고 있다. 이와
같이 自己를 숨기고 가짜人
生을 사는 僑胞를 누가 信
用하며 尊嚴하라. 差別을 根
據하기전에 먼저 없었던 自
己를 되찾아야 한다. 다음에
已를 되찾아야 한다. 다음에
韓民族의 矜持를 가지고 日
本人에게서 尊嚴을 받을만한
行動을 해야 할것이다. 우리
祖上들이 千餘年의 艱難에
걸쳐 쌓아온 尊嚴이 不過二
百年未滿의 짧은 동안에 무너
져 버렸다. 이尊嚴을 우리가
이時期에 다시 쌓기 始作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基督者로
서의 내 指紋拒否의 心情을
밝혀 둔다.
나 金齊炫은 하나님의 특
別한 摂理와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 내게 對
한 하나님의 摂理가 무엇인
지 있을까?

의 몸과 肢体(고전12:27)
인 나는 아직 明白히는 모
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 내위에 있는 것을 나는
分明히 느낀다.
하나님께서 나를 韓民族
의 한사람(로만2:12)으로
十世紀라는 이「年代」를 定하
시어 이日本땅에「居住」의境
界를 限하(행17:26)하여
게 하셨다.
또한「罪」를 犯하였을때 하
나의 榮光에 이르지 못
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救贖으로 말미암아 하
나의 恩惠로 贖아 義
다 하심을 얻은者(롬3:23
24)가 되게하여「하나님
로 더불어 和平을 누리」(롬
5:1)며「하나님의 榮光을
바라고 즐거워하」(롬5:2)
게 되었다. 이제 이몸은 내
몸이 아니고「하나님께로부
터 받은바」내「가운데 계신
聖靈의 殿」(고전6:19)이며
「그리스도의 몸」과「그肢
體이다」(고전12:27)이것이바
로「하늘에 속한者의 榮光」
(고전15:40)이다.
그러므로「그리스도 예수안
에 있는 聖靈의 法」으로 定
罪한 罪人(롬8:2) 罪人
을 받은 自由者인 내가 다
시「世上」가운데 살(롬6
3)「世上」을 이기(요16:33)
했다. 主는「世上」을 끝까지
나와「恒常」한계(마28:20)
게신다. 아멘

フナオミ
婦人服企畫
(デザイン・パターン)
サンプリング
募集スタッフ
工場指導・営業・パタン
ナー助手・製斷(サンブ
ル)・ソーイング(サン
ブル)
資格 男女・洗礼を受け
た25才までの方 希望、
他も相談に応じます。
取引先 伊藤忠・ラビナ
大川通商・大磯産業 他
10社
代表 梁 泰 熙
(大阪北部教会員)
大阪市北区中崎西一
丁目二十
番六(三三)七九〇

外登法改正に関する
声 明 文

在日大韓基督教會第三十八回
定期總會が、一九八五年十月二
十二日より二十四日まで、福岡
教會において「新しい業をなさ
れる神」(イザヤ書四二・五・
九)という主題で開催された。
在日大韓基督教會は、一九八
三年十月、東京教會で開かれた
第三十七回定期總會において、
「外国人登録法の改正を要求す
る決議文」を採択し、指紋拒否
実行委員会を組織した。今年の
十月には、外国人登録証の大量

切替えが終ることに成り、指
紋捺拒否・留保者は、一万三
千名に達するに至り、私共の
教會においても約四百名が指紋
捺拒否・留保をした。この時
局に際し、私共の總會は、外国
人登録法の根本的改正がなされ
るまで、この改正運動を継続し
てゆくことを再び確認した。
外国人登録法において根本的
に改正すべき事項は以下の通り
である。

一、指紋捺拒否の完全撤廃

二、外国人登録証の常時携帯
義務の廃止

三、罰則廃止

四、外国人登録証の五年ごと
の更新制度の廃止

なお、在日大韓基督教會は、
日本法務省が指紋を拒否する良
心的な在日韓国人及び外国人に
對する再入国不許可の報復措置
を即時中止するように要求する
と共に、宣教師の在日ビザを停止
しない取り消すという措置を即
時撤回することを要求する。

在日大韓基督教會は、宣教師
約を結んでいる諸教會(日本キ
リスト教団・基督教大韓連理會
大韓イエス教長老教會(統一)

總會機關紙に 福音新聞に發
刊する 總會手帳が 今年ど
うな。い手帳を 聖誕節 前
용으로 各教會에서 愛用되고
 있으며、部數多 늘어져 많은
敎人이 使用할수 있다。

十月号 休刊
休刊하였음니다。
福音新聞社

不 動 産 業 務 全 般
免 許 番 号 ・ 愛 知 県 知 事 ③ 第 5426 番
太 栄 企 業 株 式 有 限 公 司
代 表 取 締 役 金 光 洙
(名古屋教會 長老)
事 務 所 名古屋市中区熱田区川井町2番21号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682)1177(代)
自 宅 名古屋市中区千種区御影町2-55-5
電 話 052(711)4398

「바벨론」 여러江辺 거기있
아서 시온을 記憶하며 울었
도다(詩篇137:1)「나
온면 유대명과 에우살함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
하는,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의
이 애절한 詩를 읽을때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할수 없다. 그것은 우리
日同胞의 身世가 그들과 비
슷하기 때문이다.

日本에 있는 七十万僑胞
다 더 情은 故郷을 그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國民은 本
國을 恨을 줄로 나는 생
각한다.

우리는 다른나라에 사는僑
胞과 다르다. 日本에 와살고
있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
니다. 나라가亡하였기 때문
에 유대사람들같이 억지로살
려와서 살게되었다. 決코 우
리는 가장 우리를 반대하는
이日本땅이 좋아서 살고있지
않는다.

本國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아무 쓸데없는者인지 모르
나 우리는 新聞을 통해서밖
에 알수 없는 本國사람들의
뉴우스 하나하나에 기빠뛰기

用되었다. 지난 韓日關係會議
에서도 우리의 待遇問題가政
治去來의 미끼로 쓰여졌다.
李長官의 國連에서의 發言이
그証거이며, 十月二十二日의
中曾根 國連會談에서도 우리의
人權問題는 나오지 않았다.
金日成政府도 日本의 經濟
技術援助를 얻기 위하여 아
양을 떠는지 指紋問題에 對
하여 아무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非國民의利
權追求도 四十年만에 드디어
리들을 다시 어둠에 할수없
다. 도리어 밝아진 우리눈으
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비
추어 國民이 痛恨하여지지않
으면 國家도 隆盛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봉사가 되어서
는 안된다.

在日僑胞의 犯罪予備軍의思
想은 故古田首相의 「不逞鮮
人」 發言以來 日本政府안에
정기게 내려오는 朝鮮人觀에
서 나온것이며, 十四년도 이
思想에서 나왔다. 萬一 在日
外國人中 六十萬이 그들이崇
尚하는 歐美人이고 僑胞가少
數者였으면 이런 規定은 外
法에 違反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는 犯罪予備軍이 아니
다. 한때 僑胞의 犯罪記事가
新聞에 자주 나오지 않았
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義務만 있고 權利도 實力도
없는 우리 僑胞가 모든 條
件이 갖추어진 日本人과 變

爭하여 生活하려는 그中에
落伍者가 나오는것도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犯罪者의 數
를 日本人의 犯罪率에 比하
면 決코 많은數가 아니다.
世界人權宣言에는 個人尊重
과 權利의 平等(一), 差
別禁止(二), 非人道的의 屈
辱의取扱 禁止(五), 名譽
와 信用의 保護(十一), 名譽
와 世界人權規約에는 生存과
自由의 保障(一), 非人
道的의 或은 品位를 損傷하는
取扱 禁止(七), 法의 平
等과 保護(二十六)가 規
定되었으며, 日本憲法에는 國
際條約과 法規의 遵守 및 違
憲法律의 無効(九十八條),
基本人權의 不可侵(十一),
九十七條), 差別禁止(十四條)
가 規定되어 있다. 또 韓日
基本條約四條에는 國連憲章原
則 適合이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在日僑胞도 日本憲
法의 適用을 받으며, 앞에
한 모든 人權이 當然히 保
障되어 있다.

따라서 外發法十四條는 憲
法違反이며, 無効한 法이다.
指紋을 찍음으로 도리어 憲
法에 違反한 罪로 日本에서
逐出을 當할 罪까지 있다.
日本政府는 日本은 法治國
이나 法을 지키라고 한다.
市民의 生活과 人權을 지켜
야할 警察은 人權規約九條와
憲法三十三條의 惡意的逮捕抑
留 禁止規定에 違反하여 指
紋捺印拒否者를 告發할 市當
局의 告發도 없이 逮捕하며
人權의 保護, 救濟措置를 해
아한 司法府는 人權規約二十
六條의 法的平等保護와 救濟
憲法十四條의 法的差別禁止에
違反한 指紋捺印規定의 違
憲性의 判決을 回絶하고있다.
이런 나라는 法治國家라 할
수 있을까?

나는 七十万僑胞가 다 指
紋을 拒否하여 法治國家 日
本의 憲法을 遵守하기를 바
란다. 이제 四十年後의 時
期를 놓치지 말고 自己를 되
찾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뿐
만 아니라 우리 子孫까지
영영 犯罪予備軍의 屈辱속에
生活해야 할것이다. 우리
는 하나같이 지으신 사람으

로서의 自己의 貴한 尊嚴을
를 깨닫고 그에 適合한 生
活을 해야한다.
差別은 하는 者도 나쁘나
받는 者도 나쁘다. 나쁘
한 朝中藥까지 우리 祖上들은日
本에 先進文化를 傳하여 주
며 尊嚴을 받았다.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 逸樂과 政爭
과 事大主義의 毒을 받아나
를 망치고 日本의 支配를
받게 되었다. 解放後 四十年
이 되어도 아직도 分斷國家
로 續은 땅이 두동강이가되
어있으며, 四分之一의 國民이
사랑하는 家族과 갈려져서
死生도 모르며 살고있다.
이러한 民族을 누가 尊嚴하라
우리 在日僑胞는 어떠한가
解放後 四十年이 되어도 일
을 열면 이름과 名譽를 빼앗
아갔고 日帝를 非難하는 그
들이 이제 스스로 日本人
인세 하려고 日本名을 쓰며
日本名을 하며 子息들까지日
本人으로 기르고 있다. 이와
같이 自己를 숨기고 가짜人
生을 사는 僑胞를 누가 信
用하며 尊嚴하라. 差別을 根
據하기전에 먼저 없었던 自
己를 되찾아야 한다. 다음에
已를 되찾아야 한다. 다음에
韓民族의 矜持를 가지고 日
本人에게서 尊嚴을 받을만한
行動을 해야 할것이다. 우리
祖上들이 千餘年의 艱難에
걸쳐 쌓아온 尊嚴이 不過二
百年未滿의 짧은 동안에 무너
져 버렸다. 이尊嚴을 우리가
이時期에 다시 쌓기 始作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基督者로
서의 내 指紋拒否의 心情을
밝혀 둔다.
나 金齊炫은 하나님의 특
別한 摂理와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 내게 對
한 하나님의 摂理가 무엇인
지 있을까?

의 몸과 肢体(고전12:27)
인 나는 아직 明白히는 모
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 내위에 있는 것을 나는
分明히 느낀다.
하나님께서 나를 韓民族
의 한사람(로만2:12)으로
十世紀라는 이「年代」를 定하
시어 이日本땅에「居住」의境
界를 限하(행17:26)하여
게 하셨다.
또한「罪」를 犯하였을때 하
나의 榮光에 이르지 못
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救贖으로 말미암아 하
나의 恩惠로 贖아 義
다 하심을 얻은者(롬3:23
24)가 되게하여「하나님
로 더불어 和平을 누리」(롬
5:1)며「하나님의 榮光을
바라고 즐거워하」(롬5:2)
게 되었다. 이제 이몸은 내
몸이 아니고「하나님께로부
터 받은바」내「가운데 계신
聖靈의 殿」(고전6:19)이며
「그리스도의 몸」과「그肢
體이다」(고전12:27)이것이바
로「하늘에 속한者의 榮光」
(고전15:40)이다.
그러므로「그리스도 예수안
에 있는 聖靈의 法」으로 定
罪한 罪人(롬8:2) 罪人
을 받은 自由者인 내가 다
시「世上」가운데 살(롬6
3)「世上」을 이기(요16:33)
했다. 主는「世上」을 끝까지
나와「恒常」한계(마28:20)
게신다. 아멘

フナオミ
婦人服企畫
(デザイン・パターン)
サンプリング
募集スタッフ
工場指導・営業・パタン
ナー助手・製斷(サンブ
ル)・ソーイング(サン
ブル)
資格 男女・洗礼を受け
た25才までの方 希望、
他も相談に応じます。
取引先 伊藤忠・ラビナ
大川通商・大磯産業 他
10社
代表 梁 泰 熙
(大阪北部教会員)
大阪市北区中崎西一
丁目二十
番六(三三)七九〇